

인천광역시 고시 제2019-169호

인천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

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33조 규정에 의거 인천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관리기본계획(인천광역시 고시 제2014-250호, 2014. 12. 8.)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

2019. 7. 22.

인 천 광 역 시 장

인천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관리기본계획

1. 산업기술단지 개요

가. 관리기관

- (재)인천테크노파크[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(송도동)]

나. 조성목적

- 21세기를 선도할 첨단 지식기반형 신규산업의 육성
- 기업기술의 고도화 및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거점으로 구축
- 송도신도시 및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를 선도하는 연구개발의 중추기능 수행

다. 추진경위

- 1997. 12. 23 : 시범테크노파크 조성 사업자지정(통상산업부)
- 2000. 03. 30 :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지정
- 2000. 09. 18 :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(2,655,143㎡중 인천테크노파크부분)개발사업시행자 지정
- 2001. 11. 26 : 실시계획승인 및 고시
- 2001. 12. 14 : 송도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관리공단 설립인가
- 2008. 03. 10 : 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개정 고시(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-45호)

- 2010. 09. 24 : 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개정 고시(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-290호)
- 2013. 06. 17 :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개정 고시(인천광역시 고시 제2013-93호)
- 2014. 12. 08 :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개정 고시(인천광역시 고시 제2014-250호)
- 2019. 05. 07 :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지식정보산업단지 실시계획(변경)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(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-21호)

2. 관리기본계획

가. 관리기본 방향

(1) 목 표

- 기업-대학-연구소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집적형 테크노파크 조성

(2) 추진방향

- 쾌적한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여 첨단산업의 기지화

나. 산업단지 용도별 구분계획

구 분	계	산업시설 구 역	지원시설 구 역	공공시설 구 역	녹지구역
면적(m ²)	453,523.4	168,085	190,925.7	65,156	29,356.7
구성비(%)	100.0	37.0	42.1	14.4	6.5

(1) 관리대상 건축물의 범위

- 건축물의 범위, 내용 등 기본적인 건축사항 및 관리는 관련 법규, 인천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지구단위계획에 따름
- 산업시설구역
 - 교육연구시설(연구소에 한하되, 아래에 해당하는 건물 및 시설)
 -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업의 건물 및 시설
 - 공동 연구·개발, 기술이전 및 사업화
 - 공동 연구·개발 시설의 제공
 - 시험생산

-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, 동법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,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및 이에 준하는 R&D형 기업이 연구·개발, 시험생산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 및 시설
-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
 -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부설 연구기관
-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8조 2항에 의한 공장
 - 공장등록면적은 해당 산업기술단지 안의 전체 건축물 연면적에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
- 도시형 공장설립
 -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름

○ 지원시설구역

교육연구 및 복지시설(학교, 연구소에 한함), 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중 아래 해당하는 건물 및 시설

※ 단,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물 및 시설에 한함

-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기관의 건물 및 시설
 - 공동 연구·개발, 기술이전 및 사업화
 - 산업 및 기술 분야 인적자원의 교육 및 훈련
 - 산업 및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
 - 신기술의 보호·육성 및 창업
 - 공동 연구·개발 시설의 제공
 - 시험생산
-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
 - 인천대학교, 인하대학교 등
-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제5조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

-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집적시설
 - (재)인천테크노파크 등
-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
-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
 -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
- 국·공립연구기관 및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
- 바이오 기술을 제품화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
- 민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
 - (재)인천테크노파크, 기업지원관련 기관 및 단체 등
- 공공시설구역
 -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
 - 주차장, 보행자도로, 도로 등
- 녹지구역
 -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

(2) 용도별구획 평면도 : 별첨1

다. 업종별 산업시설 배치계획

(1) 업종별 배치계획

업종별		계	
		필지수	면적(m ²)
산업 시설 구역	메카트로닉스/정밀기계, 신소재, 생물, 전자·정보	36	168,085

※ 단, 산업기술단지의 원활한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관리기관에서 조정 가능함

(2) 배치기준

- (재)인천테크노파크의 기업지원육성기능을 중심으로 유치업종별 집적화가 가능토록 공간배치
- 연구개발기관, 벤처지원기관 등이 호혜적이고 유연한 기술혁신 환경을 제공토록 관련기업용지를 집단화

라. 입주관리계획

(1) 입주대상 업종

- 메카트로닉스·정밀기계, 신소재, 생물, 전자·정보업종에 한함.

(2) 입주자격

○ 산업시설구역

- 상기 입주대상 업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업체 중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호(단, 가,나,라,마,바,자,차목은 제외함),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,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업체
- 시험평가 위주의 기업으로 시험평가관련장비 비중이 전체 장비의 50%를 초과하고 공해유발업종이 아닌 업체

○ 지원시설구역

-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19호에 규정한 지원기관으로서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기관 및 단체
- 기업기술혁신활동 촉진에 긍정적인 효과를 직·간접적으로 미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
-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호(단, 가,나,차목은 제외함), 고등교육법 제2조,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,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,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, 국공립연구기관,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

- 기타 정부가 중장기 사업으로 추천하는 기술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

(3) 입주우선순위, 입주 승인기준

○ 입주우선순위

- 인천지역 산업구조 고도화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, 대학교, 국·공립연구기관의 연구기능 및 벤처기업, R&D형 기업 등
- 최근 연구개발 실적이 많은 업체 및 기관

○ 입주승인 기준

구 분	평가점수	평가내용
입 주 승 인	90점이상	입주최적격
	80~90미만	입주적격
조건부 입주 승인	70~80미만	조건부입주 (미비사항개선)
입 주 불 허	70점미만	입주부적격

- 입주경합이 있는 경우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 우선순위 결정
- 평가항목 : 재무평가(20), 기술평가(30), 연구소 운영평가(30), 입주적합성(20)

(4) 분양한도

- 필지분할계획에 합당한 범위내의 분양면적
- 다만, 입지의 형편이나 사업계획서상 초과분양이 필요하여 입주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.

(5) 입주절차

-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기술단지 입주계약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
- 입주예정자는 계약 후 건축설계 도면 등을 관리기관에 제출, 승인을 얻은 후 건축 착수

마. 사후관리계획

(1) 목 표

-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,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, 수도권 소재 지방산업단지 입주관리요령, 산업기술단지 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, 입주계약서에 의거 산업기술단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도모

(2) 세부관리계획

[분양용지관리]

- 산업기술단지내 분양용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, 수도권소재 지방산업단지 입주관리 요령, 산업기술단지 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사후관리
- 건축을 완료하기 전(나대지 등)에 분양용지를 처분하는 경우 관리관이 매수함.
- 건축을 완료 후 분양용지 등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업종을 영위 하는 자에게 처분하여야 함.
- 경매, 기타법률에 의하여 용지, 건축물 등을 취득한 자는 관리기관에 취득신고 및 입주계약을 체결하고, 법정기간 내 계약미체결 시는 법정 양도기간 내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 하도록 함
- 경매, 기타법률에 의하여 용지, 건축물 등을 취득한 자는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 이어야 함.
- 관리기관은 입주업체가 산업시설용지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당해 산업용지를 환수할 수 있고,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함.
- 관리기관은 경매, 기타법률에 의하여 용지, 건축물 등을 취득한 자가 법정기간 내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, 법정 양도기간 내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할 경우 당해 산업용지를 환수할 수 있음.

[환경관리]

-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, 대기오염, 소음·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고,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
- 산업기술단지에서 배출되는 폐수 및 폐기물은 입주기업 및 기관에서 전량 차집하여 동 폐수 및 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춘 등록업체에 위탁 처리함.
- 산업기술단지내 공원과 완충녹지를 설치하여 입주기업 및 기관에 쾌적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, 입주기업 및 기관은 주변 환경에 적합한 조경을 하도록 추진

[안전관리]

- 풍수해 등 재해와 치안유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재해복구 협조체제 구축
- 입주기업체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함.
- 예비군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조로 산업기술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위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

[기반시설지원]

- 산업기술단지내 도로, 전력, 용수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

[주차관리]

- 산업기술단지 지원시설용지의 경우 인근 지원시설 부지를 연계한 주차장 설치 및 공동 운영을 할 수 있음.

<별첨 1. 용도별구획 평면도>

